

서울특별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의안번호
3696, 3697, 3698

2025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시민건강국)



2026. 6. 16.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 3696, 3697, 3698

I. 결산안 개요

1. 제안경과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 출 일 : 2026. 6. 26

다. 회 부 일 : 2026. 6. 27.

II. 결산현황

1. 세입결산

- 예산현액 : 261,458백만원
- 징수결정액 : 268,296백만원
- 실제수납액 : 267,402백만원
- 미 수 납 액 : 886백만원
- 정 리 보 류 : 8백만원
- 다음년도 이월액 : -
-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비율은 99.7%(전년도 98.8%)임.

〈2025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세입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수납율 (B/A)
합 계	261,458	268,296	267,402	8	886	99.7
세외수입	72,825	82,649	81,845	8	796	99.0
경상적세외수입	38,073	38,472	38,463		8	100
임시적세외수입	33,209	41,479	41,298		181	99.6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	5	5			100
지난연도수입	1,537	2,693	2,079	8	607	77.2
보조금	184,888	182,673	182,673			100
국고보조금등	184,888	182,673	182,673			1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746	2,973	2,883		90	97.0
보전수입등	3,746	2,973	2,883		90	97.0

2. 세출결산

- 예 산 액 : 774,929백만원
- 예산증감 : 11,688백만원
- 예산현액 : 786,617백만원
- 지 출 액 : 760,458백만원
- 이 월 액 : 15,322백만원
- 보조금반납금 : 715백만원
- 불 용 액 : 10,123백만원
 -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1.3%(전년도 2.0%)가 발생
 - 불용사유별 금액

(단위 : 백만원)

불용액	원 인 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10,123	918	101	1,798	878	6,428	-

〈 2025년도 시민건강국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년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D)	집행잔액 (E=A-B-C-D)	불용율 (%)
총 예 산	786,617	760,458	15,322	715	10,123	1.3
사 업 예 산 계	769,027	745,007	15,322	709	7,985	1.0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서비스 수준 향상	49,110	48,709	-	33	368	0.7
시민건강수준 향상(스마트)	64,952	64,519	-	-	433	0.7
시민건강수준 향상(건강)	166,779	164,766	-	-	2,013	1.2
시민정신건강 수준 향상	124,631	122,509	-	399	1,722	1.4
코로나19 대응 수준 향상	50,429	50,429	-	-	-	-
생활보건 관리 향상	114,328	114,223	-	2	102	0.1
식품안전성 관리향상	24,678	24,042	-	218	418	1.7
공공의료체계 구축 및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110,337	104,043	6,180	-	114	0.1
보건환경연구원 효율적운영	17,397	16,501	81	55	759	4.4
전문특화된 의료서비스 제고	8,625	8,039	70	-	516	6.0
연구활성화 및 시설환경 개선으로	22,757	14,083	7,817	-	856	3.8
진료서비스 증진(은평)						
연구활성화 및 시설환경 개선으로	15,004	13,144	1,174	2	684	4.6
진료서비스 증진(서북)						
일 반 예 산 계	17,592	15,449	-	6	2,137	12.1
행정운영경비	10,597	9,019	-	6	1,572	14.8
재무활동	6,995	6,430	-	-	565	8.1

가. 예산 이용 : 없음

나. 예산 전용 : 13건, 8,227백만원

다. 예산 이체 : 없음

라. 예산의 변경사용 : 24건, 2,364백만원

마. 예비비 사용 : 2건, 1,899백만원

바.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 19건, 15,322백만원

- 명사이월 : 1건, 420백만원

- 사고이월 : 19건, 14,902백만원 (1건 명시·사고이월 모두해당)

사. 국고보조금 집행

- 수 령 액 : 178,374백만원

- 집 행 액 : 177,666백만원

- 이 월 액 : 없음

- 집행잔액 : 715백만원

3. 기금결산

〈 2025년도 기금 조성현황 〉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전년도말 현재액 ①	2025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⑤=①+②
		계 ②=③-④	조 성 액 ③	사 용 액 ④	
식품진흥기금	56,709	5,148	7,800	2,652	61,857

〈 2025년도 기금 운용현황 〉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계	22,510	계	22,510
용자금회수	5,104	용자성사업비	842
예치금회수	14,710	비용자성사업비	1,807
이자수입	1,987	기본경비	4
기타수입	709	예치금	9,857
		예탁금	10,000

4. 채권현재액 : 11,624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도말 현재액 ①	2025년말 현재액 ②	전년대비 증감 ③=②-①
금 액	15,849	11,624	△4,229

5. 채무결산 : 8,2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채무종류	세부사업명	발행일	발행액	상환기간
지방채증권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 료센터 건립	2021. 12. 07	8,200	5년거치 일시상환

6.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 2025년도말 실국별 관리 공유재산

- 건물 404,595 m² 529,586 백만원,
- 토지 351,244 m² 1,177,588 백만원,
- 기타 73건 9,058백만원,

총 1,716,233 백만원 상당의 금액

〈 2025년도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

(단위:백만원)

구 분		2024년도말 보유현황	당해년도 증감액		2025년도말 보유현황
			증가	감소	
합 계		1,685,533	30,700		1,716,233
행정재산	계	1,491,733	38,311		1,530,044
	공용재산	1,284,649	37,708		1,322,357
	공공용재산	207,084	602		207,686
	일반재산	193,800		7,611	186,189

7. 물품 증감 및 현재액

- 2025년도말 시민건강국 소관 관리 정수물품은 수량 981개,
현재액 11,483백만원

〈 2025년도 정수물품증감 및 현재액 〉

(단위:수량-개, 금액-백만원)

구분	2024년도말 보유현황		당해년도 증감액						2025년도말 보유현황
			증가			감소			
			구매	관리전환	소계	매각	관리전환	소계	
합계	수량	981	307	110	413	20	16	36	1,358
	금액	11,483	780	535	1,255	231	179	410	12,328
일반회계	수량	981	307	110	413	20	16	36	1,358
	금액	11,483	780	535	1,255	231	179	410	12,328

Ⅲ. 검토보고 (수석전문위원 윤혜숙)

1 세입결산 검토

가. 세입결산 총괄 개요¹⁾

- 2025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세입 예산현액 2,614억 5,800만원에 대해 징수결정액은 2,682억 9,6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674억 200만원임.
-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은 99.7%로, 이는 직전회계연도의 수납률 대비 0.9%p 증가함.

【 시민건강국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수납률 (B/A)
2025년도	261,458	268,296	267,402	8	886	99.7
2024년도	225,371	235,901	233,166	25	2,710	98.8
2023년도	248,567	256,007	254,378	10	1,619	99.4

- 일반회계의 예산과목별 세입결산은 다음과 같음.
-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및 지난연도 수입에서 징수결정액은 826억 4,9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818억 4,500원임.

1) 이하 세입·세출 결산 검토와 관련하여 보고서에 제시된 표의 수치는 백만원 단위 변환으로 인해 실제 수치와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보조금은 국고보조금등으로, 징수결정액 1,826억 7,300만원에 대해 전액 수납함.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보전수입등으로, 징수결정액은 29억 7,3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8억 8,300만원임.

【 2025년도 세입과목별 세입결산 총괄 】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합 계		261,458	268,296	267,402	8	886
세외수입		72,825	82,649	81,845	8	796
	경상적세외수입	38,073	38,472	38,463		8
	임시적세외수입	33,209	41,479	41,298		181
	지방행정제재·부과금등	5	5	5		
	지난연도 수입	1,537	2,693	2,079	8	607
보조금		184,888	182,673	182,673		
	국고보조금등	184,888	182,673	182,673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746	2,973	2,883		90
	보전수입등	3,746	2,973	2,883		90

나. 세입결산 검토의견

1) 세입 중 미수납액 관련

- 2025년도 시민건강국의 미수납액은 8억 8,6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 미수납액 27억 1,000만원보다 18억 2,400만원이 감소함.
- 미수납액의 경우, 주로 ① 지난연도수입(6억 700만원 발생), ② 임시

적세외수입(1억 8,100만원 발생)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 미수납액의 내역을 살펴보면, 2024회계연도 이전 시비보조금반환금 등 반납지연(6억 700만원),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지연 등(9,000만원), 납부기한 미도래 및 사업 정산잔액 등 자치구에 보조한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지연(7,200만원) 등으로 인해 발생함.

【 2025 회계연도 시민건강국 미수납액 과목별 현황 】

(단위: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액	징수 결정액	실제 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액 발생사유
기타사업수입	112	74	70	4	제대혈 사용 병원의 납부 지연 ('26.5월기준 수납완료)
기타이자수입	655	1,938	1,933	4	시비보조사업 정산 후 발생이자 미납
시·도비 보조금등 반환수입	24,983	34,175	34,103	72	납부기한 미도래 및 사업 정산 잔액 등 자치구에 보조한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지연
자체 보조금등 반환수입	4,492	3,472	3,413	59	납부기한 미도래 ('26.5월기준 수납완료)
그 외수입	331	495	444	50	미확인 장기보관금 세외수입 처리(재무과 요청) 관련 고지서 발급 오류 ('26.5월기준 처리완료)
지난연도수입	1,537	2,693	2,079	607	2024회계연도 이전 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반납 지연
국고보조금등 반환금	2,758	1,985	1,895	90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 59백만원 반납지연

2) 세입예산 편성 없이 수납된 세입 관련

- 「지방재정법」 제34조²⁾에서는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고, 세입과 세출을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규정하

2)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고 있음.

- 2025회계연도 시민건강국의 세입예산액을 보면, 세입예산액 편성 없이 수납된 세입예산은 없었음.

3) 당초 세입예산액 대비 과소·과다(20% 이상 차액 발생) 수납

- 세입예산액 대비 과소 수납액의 차액은 20억 2,900만원으로, 주차요금수입, 기타사업수입, 불용품매각대금,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위약금, 국고보조금등반환금에서 발생함.

【 당초 세입예산액 대비 과소 수납 현황 】

(단위: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액	실제수납액	차액	상세사유
합계	7,531	5,502	△ 2,029	
주차요금 수입	54	37	△ 18	(보건환경연구원) '24년 10월부터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20.10.5.) 별표1의 비고4에 규정된 요금 감면율을 정기 주차권에 적용하여 세입 감소
기타사업 수입	112	70	△ 42	(공공의료과) 예산추계(최근 5년간 평균 이식실적 고려) 대비 제대혈 공급량 감소로 인한 수입 감소
불용품매 각대금	112	86	△ 26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예산 편성 대비 불용품 매각 수량 감소
자체보조 금등반환 수입	4,492	3,413	△ 1,079	(감염병관리과) 민간에 교부한 보조금 정산잔액 반납금이 예산추계액 대비 과소 징수 (식품정책과)예산추계(최근3년간 결산액평균)대비시비보조금집행잔액과소징수
위약금	3	1	△ 2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예산 편성 대비 계약 완수 지연등으로 인한 위약금 미수납 발생
국고보조 금등반환	2,758	1,895	△ 862	(건강관리과) 민간에 교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정산 지연에 따

금				큰 미수납 (정신건강과)보건복지부전국민마 음투자지원사업변경내시
---	--	--	--	--

- 과소 수납 사례 중 기타사업수입은 당초 1억 1,2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추계하였으나 예산추계 대비 제대혈 공급량이 감소로 인해 실제로는 7,000만원만 수납하였는데, 제대혈 공급량에 대한 정확한 추계와 비용 징수³⁾ 노력이 필요함.
- 또한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은 당초 서울시의 추계가 부정확할 수 있으나 2024년에는 10억원이 과다 수납⁴⁾되었다가 2025년에는 10억원이 과소 수납되었는바, 보다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세입예산액 대비 과다 수납액의 차액은 111억 5,300만원으로, 기타이자수입,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그 외수입, 지난연도수입에서 발생함.

【 당초 세입예산액 대비 과다 수납 현황 】

(단위: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액	실제수납액	차액	예산대비 실수납액 과부족 상세사유
합계	27,506	38,559	11,053	
기타이자 수입	655	1,933	1,279	(건강관리과) 예산추계(최근 3년간 결산액 평균) 대비 보조금 정산이자 등 초과징수 (감염병관리과)코로나19격리입원

- 3) 2024년도에도 기타사업수입은 당초 1억 2,2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추계하였으나 제대혈 사용 병원의 비용 납부 지연으로 인해 실제 8,000만원만 수납되어 과소 수납액의 차액이 4,100만원 발생한 바 있음.
- 4) 2024년도에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은 당초 47억 7,4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추계하였으나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초과징수로 인해 실제 57억 7,900만원만 수납되어 과다 수납액의 차액이 10억원이 발생했었음.

				치료비지원사업시비보조금이자발 생액초과징수 (식품정책과)예산추계(최근3년간 결산액평균)대비보조금정산이자등 초과징수 (공공의료과)시립병원운영사업이 자수입초과징수 (보건환경연구원)법인통장이자발 생분증가 (어린이병원) 치료 활성화에 따 른 외래수입 증가로 인한 이자수 입 증대 (은평병원)예측어려운수입초과발 생
시·도비 보조금등 반환수입	24,983	34,103	9,120	(감염병관리과) 코로나19 격리입 원치료비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초과발생 등으로 예산 추계(최근 3년간 결산액 평균) 대 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초과징 수
그외수입	331	444	114	(건강관리과) 매력일자리 및 동 행센터방문건강관리 사업 보험료· 퇴직적립금 등 반납 (감염병관리과)국가결핵관리사업 세 입 세 출 외 현 금 장 기 보 관 금 (2014~2018회계연도)초과징수 (공공의료과)직원휴직등에따른반 납분발생등으로예산액대비초과징 수 (은평병원)예측어려운수입초과발 생 (서북병원)부가가치세예수금보관 금등일시적으로증가하여초과징수
지난연도 수입	1,537	2,079	541	(감염병관리과) 2023년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사업 시비 집행잔액 초과 징수 (식품정책과)예산추계(최근3년간 결산액평균)대비초과징수 (공공의료과)24년도에제대혈공급 비용부과하였으나25년도에납부 됨,24년도에그린리모델링사업국비

			집행잔액및이자부과하였으나25년 도에납부됨 (은평병원)징수결정회계연도와납 기회계연도불일치
--	--	--	---

2 세출결산 검토

가. 세출결산 총괄 개요

- 2025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7,866억 1,700만원임.
- 예산현액 가운데 지출액은 7,604억 5,800만원이며, 다음연도로 153억 2,200만원을 이월하였고, 7억 1,500만원의 보조금이 반납되어 집행잔액은 101억 2,300만원으로 나타남.
- 불용률은 1.3%로, 이는 직전회계연도의 불용률 보다 0.7%p 감소함.

【 시민건강국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표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불용액 (B)	불용액 비율 (B/A)
2025년도	708,241	786,617	760,458	15,322	715	10,123	1.3
2024년도	632,019	731,819	706,173	9,789	989	14,868	2.0
2023년도	649,467	673,725	632,443	18,085	813	22,384	3.3

나. 세출결산 검토의견

1) 예산의 이용·전용·변경사용·이체 관련

-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지방재정법」제47조⁵⁾에 따라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대로 집행되어야 하나, 예산편성 후 사정변경 내용을 매년 추경을 통해 편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기 때문에 예산집행

5) 「지방재정법」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에서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원칙의 예외로 예산의 전용⁶⁾, 이용·이체⁷⁾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예산의 이용·전용·변경사용·이체 구분 】

구 분	이 용	전 용	변경사용	이 체
적용범위	정책사업간	단위사업간	세부사업간	실·과·사업소간
요구권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부서(기관)의 장	사업담당자	부서(기관)의 장
승인권자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실·국장, 사업소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 2025회계연도 시민건강국의 예산의 전용, 변경, 예비비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음.
- 예산전용 13건(82억 2,700만원), 예산변경 24건(23억 6,400만원), 예비비 사용 2건(18억 9,900만원)으로 나타남.

【 2025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이용, 전용, 이체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이용	전용	변경	이체	예비비
건수	-	13	24	-	2
승인금액	-	8,227	2,364	-	1,899

6)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7)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예산의 이용·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예산의 전용

-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제49조⁸⁾에 따라 행정과목인 정책사업 내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2025 회계연도 시민건강국의 경우 총 13건, 전용금액은 82억 2,700만원으로 나타남.
- 직전회계연도와 비교하면 전용 건수는 3건 증가하였으며 전용액은 직전 회계연도(13억원) 보다 69억 2,700만원 증가함.

【 2025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예산 전용내역

(단위: 천원)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 자	집행잔액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1	보건 의료 정책과	응급의료정보관 리자 지원(국비)	민간경상 사업보조	488,500	48,500		11-26	440,000
		공공보건 의료 역량강화	사무관리비	31,600		48,500		80,100
2	건강 관리과	기저귀 및 조제 분유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국 고보조재 원)	7,480,000	300,000		12-01	7,180,000
		권역모자의료센 터 설치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700,000		300,000		1,000,000

- 8) 「지방재정법」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1.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 자	집행잔액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3	건강 관리과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자치단체경 상보조금	4,674,708	200,000		12-01	4,474,708
		권역모자의료센 터 설치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500,000		200,000		700,000
4	건강 관리과	중증 모자의료 센터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3,200,000	1,000,000		12-01	2,200,000
		중증모자의료센 터 설치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1,000,000		1,000,000		2,000,000
5	정신 건강과	아동·청소년 정 신건강지원시설 (아이존) 운영	사회복지 시설법정 운영비보조	3,799,469	130,000		04-07	3,669,469
		아동·청소년 정 신건강지원시설 (아이존) 운영	시설비			130,000		130,000
6	정신 건강과	광역정신건강복 지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3,773,108	17,500		12-22	3,755,608
		권역정신응급의 료센터 운영(자 본)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17,500		17,500		35,000
7	감염병 관리과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자치단체경 상보조금	107,600	8,800		08-29	98,800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사무관리비	3,000		8,800		11,800
8	공공 의료과	서울특별시 제 대혈은행 운영	민간위탁금	1,019,094	9,000		09-24	1,010,094
		지방의료원 시 설장비 현대화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6,956,000		9,000		6,965,000
9	공공 의료과	지역거점병원 혁신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6,400,000	6,400,000		09-30	-
		지역거점병원 혁신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		6,400,000		6,400,000
10	보건환경 연구원	청사시설 유지 관리	공공운영비	807,441	1,937		12-29	805,504
		청사시설 유지 관리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100,309		1,937		102,246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 자	집행잔액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11	어린이 병원	어린이병원 진 료서비스 수준 관리	공공운영비	124,841	1,541		12-09	123,300
		어린이병원 직 원 위탁보육료 지원	포상금	78,692		1,541		80,233
12	은평병원	서울시 마약관 리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450,000	60,000		08-26	390,000
		은평병원 진료 서비스 수준관 리	의료 및 회 복비	191,800		60,000		251,800
13	은평병원	서울시 마약관 리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390,000	50,000		11-12	340,000
		은평병원 약무 서비스 수준관 리	의료 및 회 복비	1,172,060		50,000		1,222,060

- 위 은평병원의 2025년도 예산전용은 모두 서울시마약관리센터 운영사업(사무관리비)에서 은평병원 진료서비스 수준관리(의료및회복비) 및 은평병원 약무서비스 수준관리(의료및회복비)로 각각 1건이 발생함.
- 이 중 은평병원 약무서비스 수준관리(의료및회복비)로의 전용(5,000만원)은 “대상포진 백신(고가 백신인 싱그릭스주) 수요량 급증으로 의약품 구매를 위한 의료 및 회복비가 부족함”에 따라 예산을 전용하는 것으로 사유를 들고 있음9).
- 대상포진 백신의 부족한 수량을 확보하여 환자 진료에 만전을 기하려 한 취지는 이해되나, 서울시 마약관리센터 운영사업은 2025년도 본예산 신규사업으로, 당초 사무관리비 4억 5,000만원은 “서울시 마약관리센터 운영에 따른 상담·치료·재활 및 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

9) 자료: 서울특별시 은평병원(2025. 11.), 의약품 구매를 위한 의료 및 회복비 부족에 따른 약무서비스 수준관리 예산전용 계획,
서울시 마약관리센터 운영 신규사업 예산안 산출근거 사무관리비 증감사유

액으로 편성¹⁰⁾되었던 것인데, 이 예산에서 총 1억 1,000만원이 전용된 것과 관련해, 당초 과다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됨¹¹⁾.

나) 예산의 변경사용

- 예산의 변경사용은 「지방재정법」에 명시적인 근거 규정은 없으나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 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2025회계연도 시민건강국의 경우 총 24건, 변경금액은 23억 6,400만원으로 나타남.
- 직전회계연도와 비교하면 변경 건수는 동일하며 변경액은 직전 회계연도(48억 7,300만원) 보다 25억 900만원 감소함.

【 2025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예산 변경사용 내역 】

(단위: 천원)

과 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일 자	집행잔액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1	보건의 료정책 과	응급의료정보관 리자 지원(국비)	민간경상 사업보조	560,000	1,500		11-24	558,500
		서울응급의료지 원센터 운영지원 (국비)	민간경상 사업보조	200,700		1,500		202,200
2	보건의 료정책 과	응급의료정보관 리자 지원(국비)	민간경상 사업보조	558,500	70,000		11-25	488,500
		소아의료체계 구 축(국비)	자치단체 경상보조 금	3,230,000		70,000		3,300,000

10) 자료: 2025년도 예산안 사업별설명서(시민건강국)

서울시 마약관리센터 운영 신규사업 예산안 산출근거 사무관리비 증감사유

11) 자료: 2026년도 예산안 사업별설명서(시민건강국)

서울시 마약관리센터 운영 계속사업 예산안 사무관리비 ' 25년도 최종예산 4억 5000만원 → ' 26년도 본예산 9,932만원

과 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일 자	집행잔액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3	보건 의 료 정 책 과 (현.정 신 건 강 과)	마약류 예방교육· 홍보	민간경상 사업보조	91,000	88,500		12-03	2,500
		마약류중독자 치 료보호	의료 및 회복비	558,500		88,500		647,000
4	보건 의 료 정 책 과	기본경비	국내여비	131,600	20,000		12-08	111,600
		기본경비	사무관리 비	108,327		20,000		128,327
5	보건 의 료 정 책 과	기본경비	국내여비	132,300	700		11-27	131,600
		기본경비	직책급업 무수행경 비	40,200		700		40,900
6	건강관 리과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 구축 (국비)	민간경상 사업보조	1,142,000	481		07-23	1,141,519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 구축 (국비)	자치단체 경상보조 금	981,500		481		981,981
7	건강관 리과	기저귀 및 조제 분유 지원	사회보장 적수혜금 (국고보조 재원)	7,527,479	47,479		10-31	7,480,000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전환 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 금	33,397,321		47,479		33,444,800
8	건강관 리과	난청 조기진단 지원	사회보장 적수혜금 (국고보조 재원)	113,750	14,303		10-31	99,447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전환 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 금	33,457,455		14,303		33,471,758
9	건강관 리과	고위험임산부 의 료비 지원	사회보장 적수혜금 (국고보조 재원)	1,308,667	55,895		10-31	1,252,772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전환 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 금	33,341,426		55,895		33,397,321

과 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일 자	집행잔액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10	건강관 리과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자치단체 경상보조 금	4,687,363	12,655		10-31	4,674,708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전환 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 금	33,444,800		12,655		33,457,455
11	건강관 리과	동행센터 방문건 강관리	자치단체 경상보조 금	29,705,749	752,000		11-20	28,953,749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전환 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 금	33,471,758		752,000		34,223,758
12	건강관 리과	기저귀 및 조제 분유 지원	사회보장 적수혜금 (국고보조 재원)	7,880,000	85,041		08-27	7,794,959
		미숙아 및 선천 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회보장 적수혜금 (국고보조 재원)	933,059		85,041		1,018,100
13	건강관 리과	기저귀 및 조제 분유 지원	사회보장 적수혜금 (국고보조 재원)	7,794,159	266,680		08-27	7,527,479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 리	사회보장 적수혜금 (국고보조 재원)	913,250		266,680		1,179,930
14	건강관 리과	기저귀 및 조제 분유 지원	사회보장 적수혜금 (국고보조 재원)	7,794,959	800		08-27	7,794,159
		청소년 산모 임 신출산 지원	사회보장 적수혜금 (국고보조 재원)	29,125		800		29,925

과 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일 자	집행잔액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15	건강관 리과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자치단체 경상보조 금	4,732,843	45,480		07-01	4,687,363
		생애 초기 건강 관리	자치단체 경상보조 금	774,499		45,480		819,979
16	정신건 강과	지역 치매안심센 터 운영(국비)	자치단체 경상보조 금	24,545,093	488,418		07-28	24,056,675
		지역 치매안심센 터 운영(자체)	자치단체 경상보조 금	283,200		488,418		771,618
17	정신건 강과	광역정신건강복 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금	3,797,358	22,750		12-01	3,774,608
		정신질환자 치료 비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금	598,400		22,750		621,150
18	정신건 강과	광역정신건강복 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금	3,847,358	50,000		11-25	3,797,358
		자살 유족 지원	민간위탁 금	1,043,100		50,000		1,093,100
19	정신건 강과	광역정신건강복 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금	3,774,608	1,500		12-19	3,773,108
		권역정신응급의 료센터 운영	민간경상 사업보조	891,500		1,500		893,000
20	정신건 강과	광역정신건강복 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금	3,920,058	72,700		11-24	3,847,358
		생명존중안심마 을	자치단체 경상보조 금	72,700		72,700		145,400
21	보건환 경연구 원	효율적인 연구 및 행정지원	사무관리 비	46,600	3,300		11-06	43,300
		효율적인 연구 및 행정지원	특정업무 경비	171,000		3,300		174,300
22	은평병 원	은평병원 진료서 비스 수준관리	의료 및 회복비	251,800	20,000		11-12	231,800
		은평병원 약무서 비스 수준관리	의료 및 회복비	1,152,060		20,000		1,172,060
23	은평병 원	은평병원 현대화 (리모델링)	시설비	10,762,099	239,790		10-16	10,522,309
		은평병원 현대화 (리모델링)	감리비	1,072,832		239,790		1,312,622

과 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일자	집행잔액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24	은평병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445,449	4,200	10-29	441,249
		기본경비	직책급여 무수행경비	29,700	4,200		33,900

- 위 2025년도 변경사용 중에 5건(8억 8,200만원)은 “2025년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¹²⁾의 사업비 부족분이 발생함”에 따라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난청조기진단지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지원, 서울아기 건강 첫 걸음¹³⁾,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사업¹⁴⁾에서 예산변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한 것임.
- 먼저, 강동구에 '24. 11월 대규모 아파트(둔촌동 약 1만 2천세대) 입주에 따라 임산부가 급속히 증가하여 '25. 8월부터 서비스 비용 지급분 미지급액이 발생, 강동구 내 제공기관의 운영자금 부족 및 인건비 미지급 발생, 이에 따라 집단행동이 예상(산모대상 서비스 제공 거부 등)되어 부족한 예산확보를 위해 예산변경이 불가피했다는 점은 이해되나, 이와 같은 변경사용(5개 사업에서 감액)은 다른 모자보건사업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따라서 이번과 같이 대규모 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한 사업비 부족분 발생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추계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12) □ 지원 대상 : 서울시 거주 모든 출산가정

□ 사업 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서비스 내용

－ (산모 지원) 산모의 산후회복을 위한 영양 및 위생관리, 좌욕지원 등

－ (신생아 지원) 신생아 청결관리, 수유지원, 위생관리 등

－ (가사활동 지원) 산모 식사 준비, 주생활 공간 청소, 의류 세탁 등

□ '25년 10월 기준 사업 예산

○ 44,455,234천원(시비 33,341,426천원, 구비 11,113,808천원)

13) 자료: 시민건강국 건강관리과(2025. 10.), - 202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산변경 계획

14) 자료: 시민건강국 건강관리과(2025. 11.), - 202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산변경 계획

다) 예산의 이체

- 예산이체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2(15)에 따라 예산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의 변동이 있을 때에 그 예산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2025회계연도 시민건강국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음.

2) 예비비 사용 관련

-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16)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과 예산의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제도로, 2025회계연도 시민건강국의 경우 서울형 헬스케어(손목닥터9988) 운영사업의 참여자 인센티브 전환·사용 중단 방지를 위하여 18억 500만원, 가축방역-예방약품 등 지원(국비,자본) 사업의 매칭시비 확보를 위하여 9,400만원, 총 2건, 18억 9,900만원의 지출을 결정하고 전액을 지출함.
- 직전회계연도와 비교하면 예비비 사용 건수는 1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예산액은 직전 회계연도(21억 5,100만원) 보다 2억 5,200만원이 감소함.

15)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예산의 이용·이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6)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025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예비비 지출 내역 】

(단위 : 천원)

순 번	세부사업명	지출 결정액 (a)	지출액 (b)	지출잔 액 (a-b)	처리일자		예비비사유
					지출 결정 일자	지출 일자	
1	서울형 헬스케어(손목닥터 9988) 운영	1,805,303	1,805,303		06-20	06-24	서울형 헬스케어(손목닥터 9988) 운영 사업의 참여자 인센티브 전환·사용 중단 방지를 위한 재정지원
2	가축방역-예방약품 등 지원 (국비, 자본)	93,550	93,550		10-27	12-02	가축방역-예방약품 등 지원 (국비,자본) 사업의 매칭시비 확보를 위한 재정지원

- 위 서울형 헬스케어(손목닥터9988) 운영 사업의 예비비 사용은, 당초(예산편성 시) 예상보다 참여자·사용률 증가에 따른 예산 집행액 증가로 예산¹⁷⁾ 조기 소진이 예상되고, 제1차 추경 사용 가능 시기까지 예산 공백으로 서울페이 전환·결제 중단 가능성이 높아지자, 추경 전 인센티브 지급 예산 부족분 확보를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것임¹⁸⁾.
- 먼저, 예산 문제로 인해 사업이 중단(서울페이 전환·결제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서울시 대표사업에 대한 시민 신뢰도 저하 및 참여자 이탈 가속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추경 전 예비비 사용이 불가피했다는 점은 일부 이해되나,
- 이번과 같이 참여자 제공 인센티브 예산 부족 사유로 예비비를 사용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추계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17) 자료: 2025년도 본예산 사업별설명서(시민건강국)

서울형 헬스케어(손목닥터9988) 운영 예산안에 참여자 인센티브 제공(기타보상금) 예산은 287억 6,859만원이 편성되었음

18) 자료: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2025. 6.), 손목닥터9988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예비비 사용계획

- 현 가입 추세 감안 시 ' 25년말 당초 예상했던 250만명 초과하여 278만명 달성 예상됨.
- 당초 사용률 60%로 예측하였으나, ' 25년 1분기 실제 사용률 78%.
- 현재 사용 추세를 고려하면 6월 중순에 예산을 모두 소진할 것으로 예상됨.
- 추경 사용 가능 시기까지 예산 공백으로 사업 중단 가능성 높음.

3)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사업 관련

-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그 부대경비”를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2025회계연도 시민건강국의 경우 사고이월은 19건 149억 200만원, 명시이월은 1건 4억 2,000만원으로 나타남. (1건 사고이월, 명시이월 중복)

【 이월 제도의 구분 】

구 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이월단위	편성목 단위까지	편성목 단위	편성목 단위
요구권자	자치단체의 장	부서(기관)의 장	자치단체의 장
승인권자	지방의회	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이월액확정 요구 (사업부서→ 예산부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이월액확정 (예산부서)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
기간연장	사고이월 가능	불가능	의회의결 연장, 사고
이월금액	현금수반원칙, 단 기채사업의 경우 예외	현금수반원칙, 단 기채사업인 경우 예외	당해연도 연부액만 현금수반

【 2025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예산의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

(단위: 천원)

연 번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사유	비고
1	서남병원 증축 및 기능개선	시설비	8,718,000	8,718,000	4,460,459	4,257,541	차수계약 준공기한 및 용역비 집행시기 미도래	사고이월
2	서남병원 증축 및 기능개선	감리비	320,000	320,000		320,000		사고이월
3	서남병원 증축 및 기능개선	시설부대비	6,000	3,060	3,060	2,860		사고이월
4	보라매병원 안 심호흡기 전문 센터 건립	시설비	1,495,000	1,488,850	377,660	1,111,190	공사 및 용역 집행시기 미도래 사전절차 재이행 이후 공사 용역발주 절차 이행('25.7.~10.)	사고이월
5	보라매병원 안 심호흡기 전문 센터 건립	감리비	500,000	499,400	12,900	486,500		사고이월
6	보라매병원 안 심호흡기 전문 센터 건립	시설부대비	3,880	2,020	2,020	1,860		사고이월
7	대기질 통합분 석 운영	전산개발비	288,990	259,035	178,157	80,878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25.5월 사전절차를 완료	사고이월

연 번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사유	비고
8	어린이병원 의 료 및 행정장비 확충	자산및물품 취득비	705,348	583,506	513,667	69,839	해외 의료장비로 수입 통관 절차 지연에 따른 '25년 연내 납품 불가	사고이월
9	은평병원 청사 시설 운영관리	사무관리비	270,973	262,712	208,262	54,450	집행 및 용역준공 지연 은평병원 현대화 사업	사고이월
10	은평병원 청사 시설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696,199	668,778	657,778	11,000	공사 지연에 따른 순연	사고이월
11	은평병원 의료 및 행정장비 확 충	자산및물품 취득비	553,447	535,980	406,180	129,800	나라장터·조달시스템 장애 영향에 따른 입찰 지연으로 이월	사고이월
12	은평병원 현대 화(리모델링)	시설비	13,745,094	13,732,394	6,691,119	7,041,275	병원운영과 건설공사 병행중으로 임시진료실, 임시병동 등 조성에 기간 소요되어 이월	사고이월
13	은평병원 현대 화(리모델링)	감리비	1,504,072	1,493,449	992,535	500,914		사고이월
14	은평병원 현대 화(리모델링)	시설부대비	32,969	9,525	9,525	19,360		사고이월
15	서울시 마약관 리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340,000	340,000	324,000	16,000	약물사용 청소년 대상 통합형 상담프로그램 매뉴얼 용역계약 진행 중, 연내 집행이 어려워 사고이월	사고이월

연 번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사유	비고
16	서울시 마약관 리센터 운영	자산및물품 취득비	993,847	993,847	949,347	44,500	나라장터·조달시스템 장애 영향에 따른 입찰 지연, 연내 구입과 집행의 어려움 (해외 제조·수입 장비 특성상 계약체결 후 납품기간 최소 2개월 이상 소요됨)	사고이월
17	서북병원 청사 시설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1,523,259	1,452,958	1,381,008	71,950	대형냉장고가 조달 품목에서 제외되어 조달구매에서 물품계약으로 발주방법 변경, 계획변경에 따른 이월	사고이월
18	서북병원 공공 의료서비스 수 준 관리	시설비	1,854,919	1,744,115	1,171,443	565,095	노후 승강기, 분전반 등 공사 설계보완 및 산출내역 확정절차에 따른 기간소요로 준공기한이 연장, 시설비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이월	사고이월

연 번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사유	비고
19	서북병원 의료 및 행정장비 확 충	자산및물품 취득비	907,667	476,743	359,968	536,775	나라장터·조달시스템 장애 영향에 따른 입찰 지연(무인정산기 발주 지연)	사고이월 (116,775)
							통합 구매 절차 중 비교규격장비(2개업체) 중 한 개 업체의 입찰참가 불가 사유가 발생하여 이후 절차가 중단됨	명시이월 (420,000)

4) 불용액 과다 발생 사업

- 2025회계연도 시민건강국의 불용액은 총 101억 2,300만원이 발생하였고, 불용액 발생규모가 1억원 이상 발생한 사업은 26건, 79억 4,000만원으로 나타남.

【 2025년도 시민건강국 1억원 이상 불용사업 】

(단위: 천원, %)

연 번	부서명	세부사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불용상세사유
1	보건의료 정책과	응급의료정 보관리자 지 원(국비)	440,000	160,000	280,000	63.6%	대상기관 미신청으로 국비미교부
2	스마트건 강과	서울형 헬스 케어(손목닥 터9988) 시 스템 구축 운영	2,491,147	2,083,859	407,288	16.3%	계약심사 결과 감액 및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으며, 클라우드 시스템 최적화 및 서버·트래픽 사용량 감소 등에 따라 운영비 지출 감소
3	건강관리 과	동행센터 방 문건강관리	28,953,749	28,820,450	133,299	0.5%	방문간호사 중도퇴사 및 휴직자 발생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 발생
4	건강관리 과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 원	7,180,000	6,580,000	600,000	8.4%	국비 내시변경에 따른 재원없는 불용액
5	건강관리 과	중증 모자의 료센터 지원	2,200,000	1,200,000	1,000,000	45.5%	간주 및 전용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재원없는 불용액

연 번	부서명	세부사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불용상세사유
6	정신건강 과	정신요양시 설 운영보조 (국비)	5,737,426	5,335,614	401,812	7.0%	보건복지부 수요예측 오류로 전년 대비 과도하게 편성하여 불용액 발생('25.10.27. 보건복지부 변경내시 감액 통보내역이 예산현액에 미반영됨)
7	정신건강 과	정신요양시 설 운영보조 (국비)	3,761,826	3,378,350	383,476	10.2%	보건복지부 수요예측 오류로 전년 대비 과도하게 편성하여 불용액 발생('25.10.27. 보건복지부 변경내시 감액 통보내역이 예산현액에 미반영됨)
8	정신건강 과	정신재활시 설 운영보조	22,016,218	21,604,41 3	411,805	1.9%	시설별 소요예산 예측 오류에 따른 잔액 발생
9	정신건강 과	광역정신건 강복지센터 운영	3,755,608	3,454,889	300,719	8.0%	민간위탁(서울시정신 건강복지센터 운영) 계약심사에서 인건비 감조정으로 미교부
10	정신건강 과	통합정신건 강증진	855,100	657,000	198,100	23.2%	국비 확정내시 증액에 따라 정신응급 공공병상 확대운영을 위한 4병상 추가 공모 진행하였으나 신청 기관이 없어 불용액 발생
11	정신건강 과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 원시설(아이 존) 운영	3,669,469	3,477,530	191,939	5.2%	신규시설 보조금 지원을 포함한 1년동안의 운영비 예산 편성으로 하반기부터 운영 시작하여 잔액 발생(신규시설 개관 25년 9월)

연 번	부서명	세부사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불용상세사유
12	정신건강 과	국고보조금 반환	1,501,876	1,059,968	441,908	29.4%	국비반환금 예산액 중 자치구 국비집행잔액 선반납 완료 등으로 잔액발생
13	식품정책 과	농수산물 수 거 검사(자 체)	1,075,260	914,047	161,213	15.0%	보환연 강남검사소 이전에 따른 수거검사 일시 중단(1개월) 수산물수거품목을고가 의활어구입비중을줄이 고시민다소비선어위주 로수거하여불용액발생
14	식품정책 과	학교 우유급 식 지원	1,416,667	1,080,029	336,638	23.8%	우유급식비 지원 대상자수가 줄어들어 불용액발생(※ 지원대상자수 '24년: 24,816명, '25년: 23,978명)
15	공공의료 과	국고보조금 반환(자체)	1,494,638	1,388,276	106,362	7.1%	보조사업자의 정산 및 반납 지연으로 국고보조금 연내 지출이 불가했음
16	보건환경 연구원	대기질 통합 분석 운영	2,748,517	2,594,450	154,067	5.6%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발생
17	보건환경 연구원	기본경비	1,831,415	1,619,220	212,195	11.6%	노후 기계설비 교체로 도시가스 사용량 감소 및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등을 절감하여 집행잔액 발생
18	어린이병 원	어린이병원 공공의료서 비스 수준 관리	1,216,360	1,024,281	192,079	15.8%	소아병동 성인화 문제 해소에 따른 성인환자 전원, 환자감소로 인한 일시적 식수인원 감소

연 번	부서명	세부사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불용상세사유
19	어린이병 원	어린이병원 의료 및 행 정장비 확충	705,348	513,667	121,842	17.3%	서울의료원 의료장비 통합구매 과정에서 최저가 낙찰 방식의 경쟁입찰에 따른 예산 절감분(낙찰차액 121,842천원) 발생
20	어린이병 원	기본경비	1,182,803	975,677	207,126	17.5%	도시가스 등 연료비 인상 예정분 고려 편성하였으나 요금동결 및 일부소폭인상, 51병동폐쇄운영으로 집행잔액발생
21	은평병원	은평병원 청 사시설 운영 관리	1,449,917	1,076,858	373,059	25.7%	7,041,274천원 '26년 예산으로 사고이월, 잔액 12,700천원 불용(불용사유 : 차수계약 잔액 등)
22	은평병원	은평병원 공 공의료서비 스 수준관리	578,143	294,174	283,969	49.1%	500,914천원 '26년 예산으로 사고이월, 잔액 10,622천원 불용(불용사유 : 차수계약 잔액 등)
23	서북병원	서북병원 청 사시설 운영 관리	3,454,020	3,238,322	215,698	6.2%	25년도 예산 편성 시 전년도 인력 기준으로 인건비 편성하였으나 의사 인력 이탈로 인하여 잔액 발생
24	서북병원	서북병원 공 공의료서비 스 수준 관 리	1,854,919	1,171,443	118,381	6.4%	승강기 교체 및 옥상 시설물 철거 공사 등 낙찰차액 발생 및 우천, 안전 사유 등에 의한 공사 일정 지연 등으로 인한 이월액 발생

연 번	부서명	세부사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불용상세사유
25	서북병원	기본경비	610,459	471,170	139,289	22.8%	불요불급한 초과근무 축소로 급식비 등 예산 절감하여 불용액 발생
26	서북병원	기본경비	2,640,961	2,073,488	567,473	21.5%	도시가스요금 단가 인하 및 예상전력 사용량 감소로 인한 불용액 발생

3 기금결산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따라 식품의 위생을 강화하고,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1989년에 설치되었음. 전년도말 조성액은 567억 900만원이었으나, 당해연도 조성액은 78억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26억 5,200만원이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618억 5,700만원임.

【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

(단위: 백만원)

기 금 명	전년도말 현재액 ①	2025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⑤=①+②
		계 ②=③-④	조 성 액 ③	사 용 액 ④	
식품진흥기금	56,709	5,148	7,800	2,652	61,857

- 2025년도 동 기금 운용에 대한 구체적 운영내역을 살펴보면, 기금 수입은 ‘예치금 회수’,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과징금 등)’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출은 ‘예탁금’, ‘예치금’, ‘융자성사업’, ‘비용자성사업’, ‘기본경비’ 순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 2025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계	22,510	계	22,510
용자금회수	5,104	용자성사업	842
이자수입	14,710	비용자성사업	1,807
기타수입(과징금 등)	1,987	기본경비	4
예치금회수	709	예치금	9,857
		예탁금	10,000

- 식품진흥기금은 각각 용자성사업 1개, 비용자성사업 12개, 행정운영 경비 1개의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25회계연도 기금별 사용현황은 다음과 같음.

【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항목별 사용현황 】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5년도		
		지출계획 현액	지출액	집행률
용자성사업	식품위생영업자 민간용자지원	1,500	842	56.1%
비용자성사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 및 운영	34	32	93.9%
	식품접객영업자 등 위생교육비 지원	417	417	99.9%
	선제적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	185	176	95.3%
	먹거리 통계 및 기반구축	256	246	96.1%
	먹거리전략 식거버넌스 운영 및 활성화	13	12	91.1%
	식품안전정보 누리집 운영 및 유지보수	73	63	86.2%

사 업 명		2025년도		
		지출계획 현액	지출액	집행률
	식품안전 전문교육	100	99	99.4%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373	369	98.8%
	전통시장 식품안전관리 지원	10	10	97%
	서울시민 식품 위해요소 발굴 및 개선	10	9	92%
	자치구 식품안전 및 위생분야 종합평가	375	374	99.9%
	식생활개선사업 평가 및 방안 연구	22	21	97%
행정운영경비	기금관리비	5	3	66.9%

- 또한 민간 용자지원사업의 경우 시설개선자금은 12건 8억 4200만원을 용자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 2025년 식품진흥기금 민간용자지원 집행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신청 현황		용자 집행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시설개선자금	25	1,674	12	842
합 계	25	1,674	12	842

4 주요 사업 분석

1. 서울형 헬스케어(손목닥터9988) 운영 사업 분석

가. 현황

- 서울형 헬스케어 운영 사업은 ‘손목닥터9988’ 전용 앱을 통해 참여자들의 맞춤형 건강활동을 지원하고, 참여도에 따라 인센티브(이하: 손목닥터9988 포인트)를 제공하는 비대면 건강관리 사업임.

【 사업개요 】

대상 : 18세 이상 서울시민 누구나(서울소재 직장인, 대학생, 자영업자 포함)
방법 : 손목닥터9988 앱 다운로드
적립 항목 : 걷기, 이벤트·챌린지 참여 등
적립가능 포인트 : 최대 14만 2천 포인트/연(신체활동 최대 75,000p + 맞춤형 관리 최대 67,000p)
포인트 사용 : 모은 포인트는 서울페이 전환하기 또는 따릉이 쿠폰 구매하기로 사용 가능
출처: 손목닥터9988 홈페이지(검색일 : 26년 6월 4일 기준).

-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동 사업은 지난해 본예산, 예비비¹⁹⁾, 제1차 추경 예산을 통해 확보한 기타보상금 예산현액 총 601억 7,030만원(이 중 600억 3,900만원은 참여자 포인트 제공 예산)을 불용액 없이 전액 집행한 것으로 확인됨.

【 2025 회계연도 서울형 헬스케어(손목닥터 9988) 운영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본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1차추경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소계	30,374,143	40,000	1,805,303	29,616,399	61,835,845	61,830,401	5,443
사무관리비	1,365,544	40,000	-	20,000	1,425,544	1,420,738	4,805
시책업무 추진비	10,000	-	-	-	10,000	9,999	-
기타보상금	28,768,599	-	1,805,303	29,596,399	60,170,301	60,170,301	-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230,000	-	-	-	230,000	229,361	6)38

19) (예비비 사용사유) 손목닥터9988 참여자들의 인센티브의 전환·사용 중단 방지를 위해 추경예산 편성 전까지 예치금 부족분을 예비비로 확보

나. 분석의견

첫째, 참여자 모집 미달에도 연말 포인트 지급 기준 임의 변경 등을 통한 인위적인 예산 소진 문제.

- 서울시는 2025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25년 누적 참여자 수를 250만 명으로 예상하고 포인트 사용률을 60%로 추계하여, 이들이 1년간 신체활동 및 식단·홈트·이벤트 등의 건강활동 참여로 적립 및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예산을 287억원(통계목: 기타보상금)으로 추계했었음.

【 25년 본예산 편성 당시 손목닥터 9988 참여자 모집 목표 및 포인트 예산 추계 】

구분	2024년 참여자		→	2025년 참여자 수	
	모집 목표	최대 적립 가능 포인트		모집 목표	최대 적립 가능 포인트
① 신규참여자	108만명	100,000p		143만명	100,000p
② 기존참여자	45만명	70,000p		107만명	70,000p
③ 누적참여자	153만명			250만명	
④ 포인트 예산	231억원			287억원	

【 25년 본예산 편성 당시 287억원 포인트 세부 산출내역 】

① 1년 차 참여자('24.7.~'25.12. 참여자): 143만명, 18,839백만원

구분	포인트	적립률	사용률	인원	예산
신체활동	73,000P	$28\% \times 81\%$	60%	1,430,000명	14,205,391,200
식단 등	27,000P	20%			4,633,200,000

※ '25년부터 1년차 참여자, 매일 8,000보 걷기시 200P 지급 : $200P \times 365일 = 73,000P$

② 1년 이상 참여자('24.6. 이전 참여자): 107만명, 9,930백만원

구분	포인트	적립률	사용률	인원	예산
신체활동	54,750P	$28\% \times 81\%$	60%	1,070,000명	7,971,906,600
식단 등	15,250P	20%			1,958,100,000

※ 1년 이상 참여자, 매일 8,000보 걷기시 150P 지급 : $150P \times 365일 = 54,750P$

- ▶ (적립률) '24.7월 기준 신체활동 적립률 28%, 식단·홈트·이벤트 등을 통한 적립률 20%로 추정
- ▶ (조 정) 신체활동(걷기)는 매일 접속시 포인트를 지급할 예정으로 '24.9월 기준 걷기(8,000보) 완료 당일 포인트 획득·적립 비율 81%
- ▶ (사용률) 적립한 포인트 중 서울페이머니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비율을 60%로 추정 ※ '23년 사용률 76.2%, '24년(10.27 기준) 37.7%

출처: 2025년도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그러나 지난 '25년 제1회 추경 당시에는, '25년 말 누적 참여자가 278만 명에 달하고 포인트 사용률도 78%까지 증가할 것으로 재추계하여, 무려 309억원(통계목: 기타보상금)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추계²⁰⁾한 바 있음.

【 25년 제1회 추경안 편성 당시 손목닥터 9988 참여자 모집 목표 및 포인트 예산 재추계 】



출처: 제331회 정례회 시민건강국 주요 업무보고(2025. 6.).

【 서울형 헬스케어 운영 2025년 제1회 추경안 및 산출내역 】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기 타 보 상 금	○ 참여자 인센티브 제공 59,634,998,000원(소요액)-28,768,599,000원(기정예산) = 30,866,399천원
	증감사유
	○ 누적 가입자 수 증가(당초 예상 250만→278만) 및 인센티브 사용률 증가(60%→78%)에 따라 인센티브 예산 증액 필요

출처: 2025년 제1회 추경사업설명서(시민건강국)에서 참여자 인센티브 제공 예산 관련 부분만 발췌.

- 하지만 2025년도 최종 누적 가입자 수는 265.2만 명에 그쳐, 추경 편성 당

20) 보건복지위원회는 동 사업에 대한 제1회 추경안 예비심사 결과 31억 3,164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나 예결특위 증액조정으로 14억 3,164만원이 증액되어 최종적으로 295억 9,639만원이 편성됨.

시 서울시가 예산 증액 산출 근거로 제시했던 예상 목표치(278만 명)보다 12.8만 명이나 미달하였음.

【 25년도 손목닥터9988 사업 월별 신규가입자 모집목표 및 실제 모집현황 】

(’25. 12. 31. 기준)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신규 계 (누적 계)
① 본예산 당시 예상	7.3만 (160.3만)	6.6만 (166.9만)	9.3만 (176.2만)	9만 (185.2만)	9.3만 (194.5만)	9만 (203.5만)	7.3만 (210.8만)	7.3만 (218.1만)	9만 (227.1만)	9.3만 (236.4만)	7만 (243.4만)	7.3만 (250.7만)	97만명 (250만 명)
② 추경 당시	13.3만 (176.3만)	11.4만 (187.7만)	15.3만 (203만)	9.2만 (212.2만)	7.3만 (219.5만)	25년도 제1회 추경안에는 연말까지 신규가입자 115만명, 누적 가입자 278만명 ‘예상’함							115만명 (278만 명)
③ 실제 모집	13.3만 (176.3만)	11.4만 (187.7만)	15.3만 (203만)	9.2만 (212.2만)	7.3만 (219.5만)	8.6만 (228.1만)	7.1만 (235.2만)	5.7만 (240.9만)	7.4만 (248.3만)	6.8만 (255.1만)	5.9만 (261만)	4.2만 (265.2만)	102.2만 (265.2만)

출처: 요구자료(요구번호 902번).

- 이처럼 예산안 산출의 중요한 지표인 가입자 수가 예측치보다 크게 미달 (12.8만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자 포인트 예산이 불용액 없이 전액 집행되었다는 점은, 집행 과정에서 당초 계획에 없던 과도한 포인트 지급 등 인위적인 예산 소진성 집행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²¹⁾.
- 위와 관련해, 실제 서울시는 회계연도 말인 지난 ’25년 12월 1일 언론보도를 통해 “서울시 대표 밀리언셀러 정책 ‘손목닥터9988’을 슈퍼앱으로 업그레이드한다”고 발표하면서 「손목닥터9988 포인트 적립제도」를 재차 개편한 바 있는데,

21) 가입자 수는 크게 미달하였으나, 포인트 사용률이 추경안 편성 당시 예측치(78%) 보다 상회(’25년도 적립액 대비 사용률 91%)한 점이 참여자 포인트 예산 전액 집행에 일부 작용했을 수 있음.

- 개편된 포인트 적립제도에 따르면, 12월 1일부터 기존 걷기 활동 외에 신규 건강관리 포인트 항목(체력측정, 대사증후군, 치매, 금연 관리프로그램)이 대거 신설되었으며, 이에 따라 참여자 1인당 연간 최대 획득 가능 포인트가 기존 최대 10만P²²⁾에서 최대 14.2만P(신체활동 최대 7.5만P + 맞춤형 관리 최대 6.7만P²³⁾)로 대폭 확대되었음.

보도명 "보험료 할인, 대중교통 마일리지 지급... '손목닥터9988' 슈퍼앱으로 진화"
슈퍼앱 개편 포스터

건강관리 한 손에
손목닥터9988
슈퍼앱

손목닥터9988이
통합 건강 플랫폼 '슈퍼앱'으로 진화합니다.

 지속적인 걷기 실천 강화 기본 신체활동	 체력인증부터 건강관리까지 서울시 체력인증센터 체력측정	 5가지 건강진단 후 6개월 간 미션 실천 대사증후군 관리	 치매위험진단 후 미션 실천 치매 예방	 금연 상시 지원 금연 클리닉
-------------------------------------	--	--	------------------------------------	-------------------------------

건강관리 시작해지~?

- 22) 당초 서울시가 지난 ' 25년 제1회 추경안 제출(' 25. 5. 26. 전인 ' 25년 2월에 수립한 「손목닥터9988 인센티브 개편 계획」에 따르면, ' 25년 3월 21일부터 참여자 1인당 연간 신체활동, 이벤트, 챌린지 참여 등을 통해 최대 획득 가능한 포인트는 신규 참여자가 10만P(=10만원), 1년 초과 참여자는 8.5만P(=8.5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었음.
- 23) 서울체력9988 제공포인트(연간 최대 12,000p), 치매예방 브레인핏45(연간 최대 12,000p), 대사증후군관리(연간 최대 25,000p), 금연관리 제공포인트(연간 최대 19,000p)

- 아울러 개편된 포인트 적립제도가 적용된 12월 한 달 동안의 손목닥터 9988 포인트 사용액은 62억 4,700만원으로, 이는 하반기('25년 6월~11월) 내내 유지되던 월평균 사용액(40억~50억 원대)과 비교해 볼 때 단 한 달 만에 이례적으로 급증한 수치임.

【 '25년도 손목닥터9988 포인트 사용 현황 】

('25. 12. 31. 기준, 단위: 백만원)

'25년 포인트 현황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누적 계
적립액	6,508	6,693	7,564 ²⁴⁾	4,883 ²⁵⁾	4,850	4,804 ²⁶⁾	4,766	4,844	5,502	5,608	5,685	3,939 ²⁷⁾	65,646
사용액	5,434	4,446	6,317	4,936	4,525	4,090	4,798	4,437	4,766	4,721	5,184	6,247	59,901 ²⁸⁾
서울페이 사용액	5,434	4,446	6,317	4,936	4,525	4,090	4,798	4,272	4,766	4,721	5,184	6,247	59,736
따릉이 구매액	-	-	-	-	-	-	-	165	-	-	-	-	165

출처: 요구자료(요구번호 894번).

- 이처럼 최종 누적 가입자가 당초 목표치에 12.8만 명이나 미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자 포인트 예산이 불용 없이 전액 집행된 점과 특히 12월에 사용액이 급증한 점은,

지난 회계연도 말의 ‘슈퍼앱 진화 발표’와 「손목닥터9988 포인트 적립제도」의 재개편이 과다 확보된 추경예산의 대규모 불용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인위적인 예산 소진성 조치였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료됨.

24) 적립항목 : 신체활동 포인트, 식단 포인트, 이벤트 포인트, 기타 포인트(가입, 출석체크, 설문조사, 건강관리 목표설정 등)

25) 적립항목 : 신체활동 포인트, 기타 포인트(가입, 설문조사)

26) 적립항목 : 신체활동 포인트, 이벤트 포인트, 기타 포인트(가입, 설문조사)

27) 적립항목 : 신체활동 포인트, 서울체력9988 포인트, 대사증후군 포인트, 금연관리 포인트, 치매관리 포인트, 이벤트 포인트

※ 12월 1일부터 신설된 포인트의 실제 적립액(' 25. 12. 31.기준)은 서울체력9988 포인트 6백만원, 치매예방관리 포인트 12백만원, 대사증후군관리 포인트 377백만원, 금연관리 포인트 3백만원으로 총 3억 98백만원임.

28) 서울시가 지난해 서울페이 전용 계좌 시금고에 예치한 금액은 59,874백만원이나, 실제 서울페이머니 사용액(결제액)은 59,736백만원으로, 시금고에 138백만원이 잔액으로 예치돼 있었음.

- 따라서, 연말에 건강관리 항목을 신설하고 연간 획득 한도를 상향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집행부의 명확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만약, 신규 건강관리 항목(체력측정, 대사증후군, 치매, 금연 관리프로그램)의 신설이 필요했다면, 연말에 급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다음 연도 본 예산안에 반영하여 의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는 것이 타당함.

둘째, 포인트 전환액 추계 실패에 따른 약 25억 3,800만원의 예산 부족 및 차기 연도 재정 부담 전가 문제

- 이번 2025회계연도 결산서상, 손목닥터9988 참여자 포인트 제공을 위한 예산 600억 3,900만원(=아래 표 ①+②)은 전액 집행되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25년도 기타보상금 세부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총 지출액 (①+②+③+④)	① 서울페이 전용 계좌 시금고 예치액	② 따릉이 쿠폰 구매	③ 인앱서비스 사업화 지원금	④ 200만 행사 관련 기부 금 지급(→ 사랑의열매)
60,170	59,874	165	80	51

주: 참여자 포인트 제공 예산은 600억 3,900만원임(①+②), 참여자들은 적립한 손목닥터9988 포인트를

① 서울페이 전환하기 또는 ② 따릉이 쿠폰 구매하기로 사용 가능

- 그러나 위 표의 ‘① 서울페이 전용 계좌 시금고 예치액(598억 7,400만원)’은 시민들이 지난해 가맹점에서 실제로 포인트를 사용(결제)한 금액이 아님. 이는 시민들이 적립·전환한 포인트가 가맹점에서 사용(결제)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자금을 시금고에 미리 예치해 둔 금액(=사용 가능 한도액)에 불과함(다음 페이지 참조).

- 지난해 시금고에 예치한 598억 7,400만 원(아래 표 ④) 중 시민들의 실제 서울페이 머니 사용액(결제액)은 597억 3,600만 원이었으며, 이에 따라 시금고에는 1억 3,8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었음(아래 표 ⑤).
- 한편, 결산서상에는 드러나지 않는 손목닥터9988 포인트 적립액 및 전환액 현황을 살펴보면, 시민들이 지난해 건강활동으로 적립한 포인트는 총 656억 4,600만원(아래 표 ②)에 달하며, 이 중 시민들이 손목닥터9988 포인트를 서울페이머니로 전환한 금액은 624억 1,200만원(아래 표 ③)에 달함.

【 '25년 손목닥터9988 포인트 적립·사용 현황 및 지급절차 】

① 손목닥터9988 사업 신청	② 포인트 적립 (건강 관리 활동)	③ 포인트 전환 (손목닥터→서울페이)	④ 시금고 예치	⑤ 포인트 사용 (가맹점 이용)
-손목닥터9988 가입	-걷기 등 건강관리 활동 -1년간 최대 14.2만 포인트 적립	-손목닥터9988포인트를 서울페이+ 손목닥터 상품권으로 전환	- 서울페이+ 손목닥터 상품권 발행 비용을 시금고 예치	- 전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주류·담배 제외)에서 사용가능
⇓	⇓	⇓	⇓	⇓
'25년 누적 가입자 265만 명	'25년 포인트 적립액 656억 46백만원	'25년 포인트 전환액 624억 12백만원	'25년 시금고 예치액 598억 74백만원	'25년 포인트 사용액 597억 36백만원 (시금고 잔액 138백만원)

주: '25년 포인트 전환액 및 시금고 잔액은 담당자에게 확인한 수치임.

- 시민이 서울페이머니로 전환한 금액은(위 표 ③)은 언제든지 가맹점에서 즉시 사용(결제)될 수 있는 금액이므로, 해당 금액만큼의 예산이 당해 연도에 전액 확보돼 있어야 하나, 서울시는 예산 추계 실패 및 예산 한계로 인해 전환액(624억 1,2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예산현액 598억 7,400만원만 시금고에 예치(위 표 ④)하는 데 그쳤음.
- 이는 형식상 집행률 100%를 달성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시민들이 이미 전환하여 언제든지 사용 가능한 포인트 예산 약 25억 3,800만원(=위 표 ③-④)을 당해 연도에 반영하지 못하고 차기 연도 재정으로 전가한 심각한 추계 실패 사례로 사료됨.

셋째, 단순 가입자 수 위주의 투입지표 설정에 따른 사업 효과성 검증 한계 및 건강 개선 결과지표(Outcome) 도입 필요성

- 손목닥터9988 사업의 최종 목표는 서울시민 330만 명의 ‘모집’이 아니라 전용 앱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개선’하는 데 있음²⁹⁾. 따라서 본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단순 참여 현황을 넘어 건강 관련 결과지표(outcome)를 중심으로 성과 평가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2025회계연도 성과계획서상 본 사업의 성과지표는 ‘서울형 헬스케어 참여율(%)’, ‘서울형 헬스케어 참여인원(만명)’ 등 단순 가입자 수 중심의 양적 지표로만 설정되어 있음.

【 2025년도 성과계획서 대비 실적 】

부서별	성과지표명(단위)	25년 목표	25년 실적	예산액 (백만원)
시민건강국 스마트 건강과	서울형 헬스케어 참여율(%)	75	87	61,835,84
	서울형 헬스케어 참여인원(만명)	190	265	

- 향후 집행부서는 본 사업의 ‘성과지표’를 동 사업의 최종 목표를 고려하여 ‘건강행태 개선율’, ‘신체활동 실천율’ 등 참여자의 건강 관련 결과지표(outcome)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 계획과 예산편성에 환류함으로써 막대한 재정 투입의 타당성과 사업 유지 필요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9) 자료 : 제324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2024년 6월 14일(금))

- 위원 : 이 사업의 목표, 100만 명 돌파 330만 명 돌파가 목적입니까?
- 시민건강국 :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양적인 거는 저희가 성과를 측정하는 수단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강통합플랫폼으로 발전시켜서 일상생활에서 건강관리 할 수 있는 도구로 정착시키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 위원 :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서울시민이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이 건강하게 사는 거잖아요?
- 시민건강국 : 거기에 기여하는 게 목표입니다.

2. 서울체력9988 인증센터 운영 신규사업 분석³⁰⁾

가. 현황

- 서울시는 '25년 10월에 「- 365일 운동하는 도시를 위한- 서울체력9988 체력인증센터 추진계획」을 수립함.
- 동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만 18세 이상 시민들의 운동습관 형성과 체력 등급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체력인증 및 맞춤형 운동처방을 제공하는 서울체력9988 체력인증센터를 2025년에 25개소, 2026년 50개소, 2030년까지 100개소를 조성할 계획임.

【 서울체력9988 운영목표 】

운영목표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체력인증센터 100개소 설치	25	50	75	80	90	100

-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해 자치구별 서울체력9988 체력인증센터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지원 계획(1차: '25년 9월, 2차: '25년 11월, 3차: '25년 12월)」을 수립하였으며, 동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18개 자치구(20개 센터)를 선정하여 이들 자치구에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로 총 44억 6,000만원을 특별조정교부금³¹⁾으로 지원함.

30) ※ 동 사업은 2026년도 본예산에 신규사업으로 편성,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는 동 사업의 예산이 편성된 바 없음. 그러나, '25년 연말에 서울시가 동 사업의 추진을 위해 18개 자치구에 특별조정교부금 예산(44억 6,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기에,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동 사업의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예산지원 관련 검토의견을 작성함.

31)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11조(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 ① 특별조정교부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교부한다.

1.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예비비를 포함한 해당 자치구의 재원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2. 자치구의 청사 그 밖에 공공시설의 신설·복구·보수 등의 사유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거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분석의견

첫째,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요건(공간 규격) 미충족 자치구에 대한 예산 지원 적정성 문제

- 서울시가 수립한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지원 계획(1차: '25년 9월, 2차: '25년 11월, 3차: '25년 12월)」에 따르면, 성인·노인 체력인증을 위한 최소 필요 면적인 85㎡ 이상의 공간(문체부 고시)을 확보한 자치구를 대상으로 특별 조정교부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요건(대상)을 규정하고 있음.

【 서울체력9988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지원 계획 】

□ 세부사업내용

○ 지원대상 : 체력인증센터 설치공간을 확보한 자치구(85㎡ 이상)

- 자치구청사, 보건소 지소 유휴공간이 없는 경우 외부 마련 가능
- 최소면적(85㎡) 확보와 함께 세부 기준(4m×6m, 3m×15m)도 동시에 충족해야 함
- ※ 기본공간과 추가 공간을 분리하여 체력인증센터 구성 가능

< [참고] 생활체육 및 체력인증을 위한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문체부 고시) >

✓ 공간의 규격

구분	필요 규격	전 연령대 필요면적	성인, 노인 인증 필요면적
기본 공간	40㎡(4m×6m 공간 포함)		
외부대상별 추가 공간	성인 2m×15m 노인 3m×5m	40㎡+2m×17m= 159㎡	40㎡+3m×15m= 85㎡

○ 내부공간 : 운동측정실, 운동처방실, 탈의실, 행정공간, 체력증진교실(선택) 등 구성

- 운동측정실과 운동처방실은 분리된 공간으로 구성(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
- 안전사고 대비 제세동기 비치, 응급상황 매뉴얼 수립, 배상책임보험 필수 가입
- 서울체력9988은 국바를 지원받지 않으므로 체력증진교실은 선택 운영 가능

○ 측정장비 : 체력측정 항목별로 규격을 준수하는 장비를 최소 1종 구비

- 국민체력100 사양을 만족하는 측정장비 도입(일부 장비 일차 물가)



- 그러나 실제 「25년도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지원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공간 규격 요건(85m²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2개 자치구(중랑구 55m², 종로구 규격 미충족)에 대해서도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확인됨(다음 페이지 참조).
- 이처럼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치구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한 것은, 재정지원 기준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훼손한 부적절한 집행 사례로 판단됨.
- 따라서 서울시는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원기준 미충족 자치구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하게 된 경위와 기준 적용 과정에 대해 명확히 소명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시 지원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엄격한 사전·사후 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겠음.

【 25년도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지원 현황 (총 18개구, 20개소) 】

연번	자치구	장 소	공간규격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지원 현황 (단위 : 천원)			비고
				1차('25년 10월) (계) 1,722,000	2차('25년 11월) (계) 2,126,000	3차('25년 12월) (계) 612,000	
1	광진구	군자건강센터 2,3층	140.19㎡	(계) 387,000 • 인건비: 169,000 • 운영비: 36,000 • 시설비: 182,000	(계) 29,000 • 인건비: 29,000		
2	광진구	구의역세권 청년주택 3층	307㎡				
3	도봉구	도봉구보건소 지하1층	120㎡	(계) 193,500 • 인건비: 84,500 • 운영비: 18,000 • 시설비: 91,000	(계) 18,500 • 인건비: 18,500		
4	은평구	불광보건지소 2층	153㎡	(계) 187,000 • 인건비: 78,000 • 운영비: 18,000 • 시설비: 91,000	(계) 25,000 • 인건비: 25,000		
5	서대문구	서대문구보건소 6층	120.62㎡	(계) 193,500 • 인건비: 84,500 • 운영비: 18,000 • 시설비: 91,000	(계) 18,500 • 인건비: 18,500		
6	중구	을지누리센터 9층	109.54㎡	(계) 193,500 • 인건비: 84,500 • 운영비: 18,000 • 시설비: 91,000	(계) 10,500 • 인건비: 10,500		
7	송파구	송파구보건소 3층	140.9㎡	(계) 193,500 • 인건비: 84,500 • 운영비: 18,000 • 시설비: 91,000	(계) 18,500 • 인건비: 18,500		

연번	자치구	장 소	공간규격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지원 현황 (단위 : 천원)			비고
				1차('25년 10월) (계) 1,722,000	2차('25년 11월) (계) 2,126,000	3차('25년 12월) (계) 612,000	
8	용산구	용산구보건소 2층	90.16㎡	(계) 187,000 • 인건비: 78,000 • 운영비: 18,000 • 시설비: 91,000	(계) 25,000 • 인건비: 25,000		
9	마포구	마포365 구민센터 4층	113㎡		(계) 424,000 • 인건비: 206,000 • 운영비: 36,000 • 시설비: 182,000		
10	마포구	마포구민 체육센터 4층	98㎡				
11	서초구	서초구민 체육센터 2층	199.5㎡		(계) 212,000 • 인건비: 103,000 • 운영비: 18,000 • 시설비: 91,000		
12	강동구	강동구보건소 지하1층	108.8㎡		(계) 204,000 • 인건비: 95,000 • 운영비: 18,000 • 시설비: 91,000		
13	중랑구	면목3.8동 행정 복지센터 3층	55㎡		(계) 212,000 • 인건비: 103,000 • 운영비: 18,000 • 시설비: 91,000		
14	영등포구	영등포구 보건소 3층	149㎡		(계) 204,000 • 인건비: 95,000 • 운영비: 18,000 • 시설비: 91,000		
15	구로구	구로구보건소 10층	245㎡			(계) 204,000 • 인건비: 95,000 • 운영비: 18,000 • 시설비: 91,000	

연번	자치구	장 소	공간규격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지원 현황 (단위 : 천원)			비고
				1차('25년 10월) (계) 1,722,000	2차('25년 11월) (계) 2,126,000	3차('25년 12월) (계) 612,000	
16	동대문구	이문보건지소 4층	91.8㎡		(계) 504,000 • 인건비: 95,000 • 운영비: 18,000 • 시설비: 91,000 • 보건지소 확충: 300,000		
17	관악구	조원생활 스포츠센터 지하1층	120㎡			(계) 204,000 • 인건비: 95,000 • 운영비: 18,000 • 시설비: 91,000	
18	종로구	4권역 건강이랑 서비스센터 (구 명륜건강증진센터)	105㎡		(계) 204,000 • 인건비: 103,000 • 운영비: 18,000 • 시설비: 91,000		규격 미충족 (국민체육진흥공단 실사결과, 화장실 이동공사 등 이슈로 '국민체력100' 설치가 불가)
19	동작구	사당지소 2층	92.27㎡	(계) 187,000 • 인건비: 78,000 • 운영비: 18,000 • 시설비: 91,000	(계) 17,000 • 인건비: 17,000		
20	금천구	금천구보건소 3층	102.5㎡			(계) 204,000 • 인건비: 95,000 • 운영비: 18,000 • 시설비: 91,000	

둘째, 자치구별 공간 규모 및 운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 배정의 형평성 결여 문제

- 자치구별 예산지원 현황을 살펴보면(앞 페이지 표 참조),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요건(85㎡)의 2~3배에 달하는 공간을 확보한 자치구(서초구 199.5㎡, 구로구 245㎡)와 기준에 미달하는 협소한 공간을 확보한 자치구(중랑구 55㎡) 간에 공간 규모, 예상 이용 인원 등 실질적인 운영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예산의 차등 배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오히려 공간 면적이 가장 협소한 중랑구(2억 1,200만 원)가 훨씬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한 구로구(2억 400만 원)보다 더 많은 예산을 지원받는 등 예산 배정의 객관적 기준과 형평성이 결여된 측면이 있음.
- 향후에는 자치구별 공간 규모, 예상 이용 인원 등 실질적인 운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가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배정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기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셋째, 국가사업(국민체력100)과 시 자체 사업(서울체력장) 이원화에 따른 중장기계획 점검 필요

- 지난해 말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당시 구 문체부 고시 기준(성인·노인 필요 면적 85㎡)에 미달한 중랑구(55㎡)의 경우 공간적 한계로 인해 당초 서울체력9988 사업의 목적인 18세 이상 전 시민의 운동습관과 체력 향상 지원이 불가능한 실정이었음. 이로 인해 중랑구민들은 특정 연령층(노인)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여 지역 간 서비스 편차 및 불평등 문제를

초래한 바 있음.

【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당시에 구) 문체부 고시 】

..... < [참고] 생활체육 및 체력인증을 위한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문체부 고시) >

✓ 공간의 규격

구분		필요 규격	전 연령대 필요면적	성인, 노인 인증 필요면적
기본 공간		40㎡(4m×5m 공간 포함)		
인증대상별 추가 공간	유소년	2m×17m	40㎡+7m×17m= 159㎡	
	청소년	7m×15m		
	성인	2m×15m		40㎡+3m×15m= 85㎡
	노인	3m×5m		

✓ 전담인력 : 행정 인력 1명, 건강운동관리사 1명, 체육지도사 1명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① 중랑구 체력인증센터는 협소한 면적(55㎡)으로 인해 노인 체력인증만 운영하고 있었으나 공간 추가 확보 및 문체부 고시 개정³²⁾에 따라 ‘국민체력100’ 성인 인증을 추가로 신청(‘26. 6. 2.)한 상태라 밝힘. 반면 ② 종로구 체력인증센터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실사결과, 화장실 이동공사 등 이슈로 ‘국민체력100’ 설치가 불가해 종로구의 경우 시 자체 사업인 ‘서울형 서울체력장’으로 운영방식을 이원화(국가사업인 국민체력100과 시 자체 사업 서울형 서울체력장) 하겠다는 입장임.
- 그러나 종로구 및 향후 신규 설치될 센터(‘26년 50개소, ’30년 100개소 운영목표)들이 ‘국가 시스템(국민체력100)’이 아닌 ‘자체 서울형 서울체력장’ 시스템으로 운영될 경우, 문체부 장관 명의의 국가 공인 인증서 발급이

32) [시행 2026. 5. 22.]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6-20호, 2026. 5. 22., 일부개정]

◇ 제·개정 이유

- 생활체육 참여 확대로 체력인증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인증기관 시 요구되는 공간 규격 요건이 지자체의 제약으로 작용하여 공모 참여 등 신규 진입이 제한되고 있어, 지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완화하고자 함.

제3조(공간 규격의 기준) ②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 받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이 자체재원으로 운영하는 인증기관(이하 "자체재원 인증기관"이라 한다)은 인증 대상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총면적은 40㎡ 이상일 것
2. 총면적 내에서 4m×5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할 것
3. 인증 대상별 추가 공간은 제1호 및 제2호 외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것

가. 유소년은 2m×17m 이상일 것	나. 청소년은 7m×15m 이상일 것
다. 성인은 2m×5m 이상일 것	라. 노인은 3m×5m 이상일 것

불가능³³⁾하며 체력인증서의 기존 주요 활용처(군입대, 채용 등 제출서류)로의 사용이 제한된다는 한계가 존재함.

- 따라서 서울시는 이원화된 운영 방식으로의 추진 필요성, 이원화된 운영 방식 간의 서비스 호환성, 시 자체 인증서의 활용 대책, 시민 혼선 방지 방안 등 향후 중장기계획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요구됨.

【 서울체력9988 기존 센터와 향후 센터 운영 계획 점검 필요 】

항 목	기존 센터 국가사업인 ‘국민체력100’ 시스템 운영	향후 센터 자체 서울형 서울체력장 시스템 운영
추진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의2(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에 관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과학적 체력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증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기준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인증의 대상, 종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근거 미비
체력인증기관 지정주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서울특별시시장
체력인증의 등급별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5-27호’ 「체력인증의 등급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 연령별(청소년기, 성인기, 노인기), 등급별(1~6등급) 상이	자체 개발
사업대상	1. 청소년(만 13세 ~ 만 18세) 2. 성인(만 19세 ~ 만 64세) 3. 노인(만 65세 이상) 4. 유소년(만 11세 ~ 만 12세)	만 18세 이상
체력인증서 발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명의로 인증서 발급	※ 서울특별시시장 명의로 인증서 발급 예정
체력인증서 활용 예	군입대, 채용 등 제출서류	현재 확인 불가
25년도 특별조정교부금 지원대상	광진구(2개), 도봉구, 은평구, 서대문구, 중구, 송파구, 용산구, 마포구(2), 서초구, 강동구, 중랑구, 영등포구, 구로구, 동대문구, 관악구, 동작구, 금천구,	종로구(25년도 특별조정교부금 지원대상) 및 향후 추가로 설치될 자치구

33) 지난 26년 5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시에 “체력인증기준이 아닌 자체 기준에 따른 인증서 발급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국민체력100 정보시스템 필수 이용에 대한 사용 기준 위반에 해당” 되므로 “서울시에서 진행한 자체 인증서 발급 즉시 중단 및 이와 관련된 시정 조치 계획을 2026.05.18.(월)까지 제출하고, 추후 국민체력인증제 사업 추진 시 관련 법령, 지침 등을 준수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란다”고 「서울시 국민체력인증센터 자체 인증서 발급 관련 시정조치 계획 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한 바 있음.

3. 비만예방 및 만성질환 관리 中 ‘어르신 장수누리터 사업’ 분석 가. 현 황

- ‘비만 예방 및 만성질환 관리 사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비만율과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을 예방 관리하여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은 '25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신규사업’으로서 ① 덴마크의 민간 제약회사인 (주) 노보 노디스크(Novo Nordisk), ② 대한당뇨병학회, ③ 대한비만학회, ④ 주한덴마크대사관과 ⑤ 서울특별시의 ‘5자간 협약’ 체결을 통해,
- (주) 노보 노디스크(Novo Nordisk)³⁴⁾로부터 총 3년에 걸쳐 약 15억원의 기부금을 서울특별시가 받아 대한당뇨병학회 및 대한비만학회와 함께 매년 5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자 한 사업임.
- '25년 세출예산 5억원은 크게 ① ‘건강관리과’가 추진하는 ‘서울시 유아비만 예방 사업(약 2억원)’과 ② ‘보건의료정책과’가 추진하는 ‘보건지소 중심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2025년 어르신 장수 누리터 사업(약 3억원)’으로 나누어 지며, 각 세부사업별 ‘세부 예산내역’은 다음과 같음.

▶ ① 서울시 유아비만 예방사업(2억) - 건강관리과 - 대한비만학회

▶ ② 어르신 장수누리터 사업(3억) - 보건의료정책과 - 대한당뇨병학회³⁵⁾

※ '25년 어르신 장수누리터 사업 (3억)의 실제 사업수행부서는 ‘보건의료정책과’이나 예산은 ‘건강관리과(타 부서예산사용)’으로 편성되었음.

34) (주) ‘노보 노디스크’는 덴마크의 대표 제약회사로서, 당뇨병 치료제로 널리 알려진 ‘오젠평 프리필드펜’ 와 비만 치료제로 널리 알려진 ‘위고비 프리필드펜’등을 개발 및 판매하는 회사임.

35) 지방보조금법 제7조제2항제3호에 근거하여,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는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공모 지정”을 통해 지방보조금 교부 가능함

<2025 회계연도 ‘비만예방 및 만성질환 관리’ 예산 현황>

	서울시 유아 비만 예방 사업		-보건지소 중심 만성질환관리- 25년 어르신 장수누리터 사업	
사업 부서	건강관리과		보건의료정책과	
예산 부서	건강관리과		건강관리과 (타 부서 예산 사용)	
예산총액	약 2억원		약 3억원	
사무 관리비	어린이 비만예방 및 건강 생활 습관 형성 지원	약 9천5백만원 (190,000원 x 어린이집 500개소)	만성질환 프로그램 개발 자문 등	약 1천만원 (200,000원 x 10명 X 5회)
	체조경연대회	약 2천만원		
	사업비 (보육교사 교육, 측정도구 등)	약 7천5백만원		
공공 운영비	측정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약 5천5백만원	없음	
민간경상 보조금	비만 예방 사업 효과분석 (대한비만학회)	약 5천만원	만성질환관리 사업 효과분석 (대한당뇨병학회)	약 4천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없음		만성질환관리 사업 운영 (장수 누리터 운영 10개 보건지소)	약 2억5천만원 (지소당 2천5백만원 x 10개 보건지소)

<2025 회계연도 ‘비만예방 및 만성질환 관리’ 결산 현황> (단위: 천원)

사업명	2025년		예산현 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사유
	본예산	추경 증액				
비만예방 및 만성질환관리	-	500,000	500,000	457,800	42,200	-
① 유아비만사업	-	200,000	200,000	197,800	2,200	전산시스템 유지 관리 용 역 낙찰 차액
② 어르신 장수누리터 사업	-	300,000	300,000	260,000	40,000	기존 평가수행 예정 협약 기관의 지방보조금법상의 행정절차 수행 불가 의사 표시로 사업 평가 미추진

나. 분석의견

‘비만예방 및 만성질환 관리사업’ 中 ‘어르신 장수누리터 사업(26년 예산 기준: 어르신 만성질환 관리 사업)’은 ‘25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신규사업’임에도 ‘25년 사업 평가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관련 ‘25년 평가 예산 (4천만원)이 모두 전액 불용되었음. 나아가, ‘26년 6월 현재 ‘25년 및 ‘26년 사업의 ‘효과성 평가 및 분석’을 수행할 주체를 선정 협의 중에 있음. 따라서, 동 사업의 ‘효과성 평가 및 분석’에 대한 조속한 정비와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동 ‘비만예방 및 만성질환 관리사업(어르신 장수누리터 사업 포함)’은 ‘25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신규’로 추진된 사업으로, 당시 보건복지위원회의 추경예산(안) 예비 심사 과정에서, (1) 이해충돌의 문제(서울시립병원의 노보노디스크 제품 구매 사용 등), (2) 사업부서(보건의료정책과)와 예산부서(건강관리과)의 이원화 문제 (사업부서가 아닌 예산부서가 보조금관리위원회 참여 등), (3)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의 ‘조건부 적정(중복사업, 사업내용 및 성과 측정 명확화)’ 등의 문제 등으로 많은 의원들의 우려와 지적이 있었던 사업임.

‘25년 제6차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회의록 [2025. 5. 13.(화) 14:00]

(중략)

○ ○○○ 위원

- 저 같은 경우는 조건부 적정으로 사전검토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5억 해서 3년간이면 굉장히 큰 사업이고, 민간 지정기탁에 의한 추경 편성인데 그거에 비해서 막 오락가락하는 거죠. 내용도, 대상도, 프로그램도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다고 했다가 대상이 또 달라지고, 방법도 달라지고. 그래서 조금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또 그거에 따른 프로그램도, 효과를 봐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다시 재검토하고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조건부 적정으로 했습니다.

○ ○○○ 위원

- 저도 사전검토 했는데 저도 조건부 적정을 한 이유는 금액이 아니라, 금액은 보조금은 9천이라 타 사업에 비해서 크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사업내용을 조금 더 정교화, 대상이나 이런 것들을 좀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제안하기 위해서 조건부 적정으로 했습니다.

○ ○○○ 위원

-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사업기간 동안에 성과 측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것도 조건에 하나 포함됐으면 좋겠습니다.

제331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5. 06. 17. 화) 회의록 발췌

- 신동원 위원: 아니, 기부할 때 **기부 기업이** 지정 기탁을 기탁소에 만성질환 및 비만에 대해 사용해 달라고만 했지 **건강관리과, 과를 지정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시 민 건 강 국 장: 위원님 지적이 저도 사실은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위원님들께서 나눠주시면 저희가 또 그대로 나눠서 쓰겠습니다.
- 도문열 위원: 그래서 저는 왜 이런 기부금을 받아서 서울시가, 그렇잖아요. 배나무 밑에 가서 갓끈 고치지 말라고 했는데 **비만·당뇨병 제약회사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서울시립의료원을 비롯해서, 서울시립의료원도 보니까 여기 이 회사로부터 약품을 구매** 하고 있어요. 그렇죠?
- 시 민 건 강 국 장 김 태 희 네. (중략) 또 하나는 당연히 노보 노디스크는 당뇨병 쪽에 세계 시장 점유율이 절반이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모든 병원이 노보 노디스크 약을 사고 있어요, 당뇨 관련해서는. 그런데 마치 우리가 이 15억 원을 받고 무슨 반대급부를 준다 이렇게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하시는데 오히려 굉장히 큰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작은 이익 때문에 공공에 기부를 하고 이러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미 많은 도시 하고 도시 건강 증진 프로젝트를 계속 매년 대규모로 해오고 있습니다.
- 도문열 위원: (중략) 이걸 앞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했던 바와 같이 결국 이 사업의 문제가 첫째는 중복되는 사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복되다 보니까 심지어 이 **기부금,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조차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중복된 사업으로 지적을 하고 조건부 적정 결과**를 했는데 그중에서는 유아비만 사업하고 이번에 추경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유아비만 예방사업이 지난 2023년도에 서울시 신체활동 활성 및 비만 예방사업하고 유사하다, 실제로 사용하는 앱도 비슷하다. (중략) 보건의료정책과에서 **건강장수센터와 장수누리터**를 아마 같이 사업을 하나 본데 그래서 결국 중복에 대한 문제 그 부분이 하나고, (중략)

- 그러나 이러한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세입’이 아닌 (1) ‘노보 노 디스크’의 ‘기부금’을 통해 추진되는 ‘순수 공익적 목적의 사업’이라는 점과 함께, (2) 비록 비구속적이긴 하나 ‘서울특별시’가 글로벌 기업, 해외 대사관 및 관련 전문학회 등과 협약을 이미 체결하였다는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예산(안)’이 원안으로 통과된 바 있음.

- 그런데, 실제 '25년 사업수행 과정에서, 동 사업 中 '어르신 장수누리터 사업(3억)'의 '사업 효과분석 예산(민간경상보조)' 약 4천만원이 전액 불용되었음. 그리고 그 사유는 당초 '협약서 제3조 및 제5조 등'에 근거해, 서울시에서 민간경상보조금 약 4천만원을 교부받아 '어르신 만성질환 관리 사업' '효과성 분석'을 수행하기로 한 '대한당뇨병학회'가 '지방보조금법'상의 '민간경상 보조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여러 '지방보조금 행정 절차 수행'이 '불가'함을 명시적으로 표명했기 때문임.

	-보건지소 중심 만성질환관리- 25년 어르신 장수누리터 사업	
사업부서	보건의료정책과	
예산부서	건강관리과 (타 부서 예산 사용)	
예산총액	약 3억원	
사무 관리비	만성질환프로그램 개발 자문 등	약 1천만원 (200,000원 x10명 X 5회)
민간경상 보조금	만성질환관리 사업 효과분석 (대한당뇨병학회)	약 4천만원 [전액 불용]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만성질환관리사업 운영 (장수 누리터 운영 10개 보건지소)	약 2억5천만원 (지소당 2천5백만원 x 10개 보건지소)

- 그리고 이에 더해, 동 사업은 '25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신규사업'임에도 '25년 사업 평가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26년 예산에 '세부사업명 - “어르신 만성질환 관리(보건의료정책과)”’로 약 2억 5천만원의 예산(사업 평가 예산 4천만원 포함)이 편성되었음.

어르신 만성질환 관리 (p.117)		
□ 추진경위 ○ 2024.12.: 민간기업 기부금 지정 기탁 제안(비만과 만성질환예방·관리) ○ 2025.3.12.: 비만 및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과목구분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사무관리비		○ 만성질환관리 사업 심의 등 = 10,000천원 - 선정 심의 수당 200,000원*5명 = 1,000천원 - 자치구 교육 강사비 360,000원*2명*2회 = 1,440천원 - 매뉴얼 제작비 등 7,560,000원 = 7,560천원
	증감사유	
	○ '25년 건강관리과 비만 및 만성질환관리사업(민간기업 기부금 지정기탁) 예산 중 만성질환관리사업을 보건의료정책과로 분리 편성 ○ 자치구 공모 심의 위원회 수당, 자치구 매뉴얼 제작, 직원 교육비 등 편성	
민간경상사업보조		○ 만성질환관리 사업 효과성 분석 = 40,000천원 - 만성질환관리사업 효과성 분석 40,000,000원 = 40,000천원
	증감사유	
	○ '25년 건강관리과 비만 및 만성질환관리사업(민간기업 기부금 지정기탁) 예산 중 만성질환관리사업을 보건의료정책과로 분리 편성 ○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대한 효과 분석비 편성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서울건강장수센터 조성 및 운영 = 933,000천원	○ 만성질환관리사업 = 200,000천원 - 만성질환관리사업 자치구 공모 20,000,000원*10개구 = 200,000천원
	증감사유	
	○ '25년 건강관리과 비만 및 만성질환관리사업(민간기업 기부금 지정기탁) 예산 중 만성질환관리사업을 보건의료정책과로 분리 편성 ○ 만성질환관리 자치구 공모 사업비 편성	

- 그런데, 문제는 '26년 6월 현재 기존 '평가주체'인 '당뇨병학회'를 대체 할 '효과성 분석 및 평가 관련 보조사업자(대한비만학회)'를 선정 협의 중에 있다는 것임. 그리고 이에 따라, 서울시가 밝힌 향후 계획인 '25년 사업에 대한 '소급 평가' 지연은 물론이고, 나아가 향후 사업까지도 '자문 및 평가'가 부실화될 우려가 존재한다고 사료됨.
- 왜냐하면, '협약서 제5조 및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사업 효과성 분석 주체'는 '사업 평가'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진행 중 전문적인 사업 자문'도 수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임. 그런데, 현재 동 사업의 '자문 및 평가'의 '주체'가 '25년 9월을 기점으로, '협약 사업 이행'을 공식 포기했기 때문에 '25년 9월 이후 시점부터 현재까지 '25년 사업 평가 및 '26년 사업 자문이 미시행 상태라 판단되기 때문임.
- 그리고 이에 더해, 동 사업의 '평가'가 (1) 3년에 걸쳐 '단기분석->중기 분석->최종분석'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과 (2) 3년의 사업 평가를 추후 최종적으로 서울시의 '만성질환' 관련 '정책수립'등에 '환류'될 예정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차년도 - 단기효과분석'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가 현재까지 지속되는 것은 전반적인 3개년 사업 전체 운영 및 최종 평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것이라 판단되기 때문임.

<출처: 2025년 어르신 장수누리터 사업 계획서 25. 5월>

□ 사업평가

○ 방법 : 대한당뇨학회 협업 효과성 분석

※ 도시건강개선 프로젝트 업무협약('25.3.12.) 사항: 프로젝트 자문, 데이터 분석 등

○ 평가방법 : 프로그램 전후 비교를 통해 만성질환 개선 효과성 분석 등

- 1차년도('25년) : 실험군, 대조군 설계 단기 개입 효과 검증

- 2차년도('26년) : 실험군, 대조군 설계 개입 효과 검증, 중기 효과 및 지속성 평가

- 3차년도('27년) : 3개년 효과성 분석, 정책제안 및 프로그램 모델화

○ 환류: 성과분석 결과는 정책수립,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 활용

- 아울러, 기존 ‘대한당뇨병학회’가 수행하려 했던 평가 사업을 ‘대한비만학회’가 수행할 예정임에 따라, 기존의 ‘대한당뇨병학회’와 함께 구상(’25년 사업 계획 - 대한당뇨병학회 자문 수행)했던 사업 및 평가 계획에 대한 ‘일정 부분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다만, ‘비만’도 대표적인 ‘만성질환’ 중 하나이며, ‘노인(어르신)의 비만 문제’ 역시 ‘70대 여성의 높은 복부비만 유병률’ 및 ‘근감소성 비만(sarcopenic obesity)’ 등으로 인해 ‘관리 및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러한 사업 계획 수정 등이 「기부금품법」상 금지되는 ‘기부금의 접수 목적 외 사용’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출처: 2025년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 - 질병관리청〉

- 주요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비만**, 심근경색증, 뇌졸중,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암, 치매
- 위험요인: 흡연, 음주, 저조한 신체활동, 불균형 영양

〈출처: 질병관리청 - 국가건강정보포털 발췌³⁶⁾〉

최근 10년간 비만 유병률은 증가하는 추세로, 2022년 기준 **성인의 비만 유병률은 37.2%, 60대에서 36.1%, 70세 이상에서 35.0%**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복부비만 유병률 또한 높아지는 추세로, 남자는 40대에서 48.8%로 복부비만 유병률이 가장 높았고, **여자는 70세 이상에서 57.2%로 가장 높은 복부비만 유병률**을 보였습니다. (중략)

비만 중에서도 근육량, 근력 및 신체활동 능력이 감소된 비만을 **근감소성 비만(sarcopenic obesity)**이라고 하며, 이는 비만만 있는 경우에 비해 **심혈관계 질환이나 골밀도 저하, 사망률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노인의 경우 근감소성 비만이 많기** 때문입니다.

- 결론적으로, 동 '25년 '어르신 장수누리터사업(26년 예산 기준 사업명: 어르신 만성질환 관리)의 '자문 및 평가체계'에 대한 조속한 정비와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아울러, 향후 '민간'과의 '협력 사업' 진행 시에는 명시적으로 사전에 관련 법령상의 '민간 주체'가 수행해야할 '법적 의무 및 행정 절차'를 미리 상세히 안내하고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 이에 더해, 비록 (1) 비구속적인 협약 사업이라는 점과 (2) '기부금'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서울시'가 '기부자'의 의사와 상관 없이 '독립적인 판단'을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최초의' '협약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 또는 중단'하는 경우 등의 '협약 해제 등'의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 '차선의 사업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협력 절차 및 체계'는 미리 '당사자들'과 정해두는 것이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마지막으로, 현재 '전액 불용' 되어 있는 '25년 세출예산 약 4천만원을 향후 어떻게 활용할 지에 대한 '정책적 검토' 및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왜냐하면, 동 '25년 세출 예산은 「기부금품법」 제5조제2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사용 용도와 목적이 지정되어 자발적으로 기탁³⁷⁾' 및 '접수'된 '기부금'이기 때문임.
- 즉, 동 '25년 세출예산은 「기부금품법」상 '기부금'의 '접수' 시에 기부자가 기부금의 사용 목적을 명시하였기 때문에, '동 불용액'을 당초 목적 외의 사업을 위한 '일반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임. 따라서,

37) 「기부금품법」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공무원'은 원칙적으로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자발적인 기탁 금품'일 지라도 '접수'할 수 없음. 다만, 예외적으로 동법 제5조제2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 금품"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자발적 기탁금품"을 "접수"할 수 있음.

향후 ‘기부금’을 ‘반납’ 할지 아니면 ‘기부 목적 범위’ 안에서 ‘세출 예산 재편성’을 추진할지에 대한 서울시의 조속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지정기탁서 상의 사용 목적 및 용도) “서울시 비만 예방 및 만성질환 관리 - 서울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만성질환으로 인한 건강 형평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

기부금품법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기부금품법 시행령 제14조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①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가 행정 목적을 수행하거나 해당 법인·단체의 설립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